

대구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3302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330219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316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변론종결 2022. 7. 21.

판결선고 2022. 11. 1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3166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피고 B 사이에 2019. 1. 7. 체결된 각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소외 D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 9. 접수 제12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D와 피고 B 사이에 2019. 1. 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소외 D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 1. 10. 접수 제3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D와 피고 C 사이에 2020. 2. 3.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21. 5. 24.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소외 D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2. 4. 접수 제25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5. 24. 접수 제148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호, 판사 이경한, 판사 박소영